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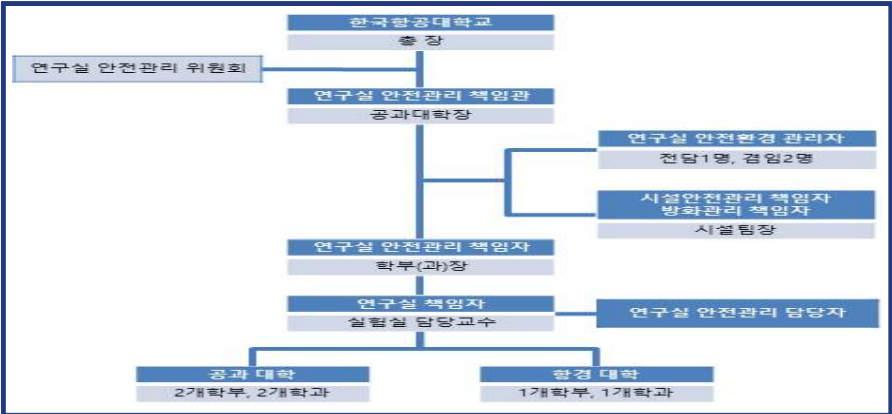

#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 회의자료

시설안전관리팀

2021/10/25

1. 일 자 : 2021. 10. 20(수)
2. 위 원 : 사무처장(위원장), 공과대학장, 환경대학장, 산학협력단장, AI융합대학장, 항우기학부장, 항전정학부장, 소프트웨어학과장, 신소재공학과장, 항공교통물류학부장, 항공운항학과장, AI융합학부장,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(3인)
3. 안 건 : ‘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정’ 개정(안) 심의
  - 개정(안) 주요 내용
    -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 위원 변경
      -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관(위원장) 변경(공과대학장 → 사무처장)
      - 위원 추가 : AI융합학부장
      - 위원 변경(시설·안전관리팀장) → 간사
    - 연구실 안전법 개정 사항 반영
      -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자료 (신구대조표) 참조

#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(안) 신·구대조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<b>제1조 (목적)</b> 이 규정은 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” (이하 ‘법’ 이라 한다) 및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 라고 한다) “대학 안전관리 규정” 에 의거하여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요인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다. &lt;개정 2009.1.20., 2014.10.23., 2018.6.15.&gt;</p>	<p><b>제1조 (목적)</b> 이 규정은 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” (이하 ‘<u>연구실안전법</u>’ 이라 한다) 및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 라고 한다) “대학 안전관리 규정” 에 의거하여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요인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다. &lt;개정 2009.1.20., 2014.10.23., 2018.6.15.&gt;</p>	<p>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 문구 개정</p>
<p><b>제3조 (용어의 정의)</b>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&lt;개정 2009.1.20.&gt;</p> <p>1~3. &lt;생략&gt;</p> <p>4. 「연구실 안전관리 책임관」 이라 함은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관리를 관리, 감독하는 공과대학장을 말한다. &lt;개정 2014.10.23., 2018.6.15.&gt;</p>	<p><b>제3조 (용어의 정의)</b>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&lt;개정 2009.1.20.&gt;</p> <p>1~3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4. 「연구실 안전관리 책임관」 이라 함은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관리를 관리, 감독하는 <u>사무처장</u>을 말한다. &lt;개정 2014.10.23., 2018.6.15. 2021.00.00.&gt;</p>	<p>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책임관 변경</p>
<p><b>제4조 (조직)</b></p> <p>① 대학에 속해있는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공과대학 행정실을 주관부서로 하고 각 학부(과)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둔다.&lt;개정 2014.10.23., 2018.6.15., 2021.00.00.&gt;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관리 조직도</b></p>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개정 2014.10.23., 2016.3.1., 2018.6.15&gt;</p>	<p><b>제4조 (조직)</b></p> <p>① 대학에 속해있는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<u>시설 안전관리팀</u>을 주관부서로 하고 각 학부(과)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둔다.&lt;개정 2014.10.23., 2018.6.15., 2021.00.00.&gt;</p> <p>②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관리 조직도</b></p>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개정 2014.10.23., 2016.3.1., 2018.6.15., 2021.00.00.&gt;</p>	<p>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도 변경</p>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<b>제8조</b> (연구실 책임자의 직무) 1~7. &lt;생략&gt; &lt;신설&gt;</p> <p><b>제9조</b> (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의 직무)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, 동법 시행령 제5조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&lt;개정 2014.10.23.&gt; 1~9. &lt;생략&gt; 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<b>제11조</b> (전담부서의 직무) 공과대학 행정실은 대학 전체의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&lt;개정 2014.10.23.&gt;</p>	<p><b>제8조</b> (연구실 책임자의 직무) 1~7. &lt;현행과 동일&gt; <u>8.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.</u> &lt;신설 2021.00.00.&gt;</p> <p><b>제9조</b> (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의 직무) <u>①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연구실안전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8조 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/u>&lt;개정 2014.10.23., 2021.00.00.&gt; 1~9. &lt;현행과 동일&gt; <u>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</u>&lt;신설 2021.00.00.&gt; <u>1.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가 여행·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</u> <u>2.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</u> <u>③ 제2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.</u>&lt;신설 2021.00.00.&gt;</p> <p><b>제11조</b> (전담부서의 직무) <u>시설·안전관리팀</u>은 대학 전체의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&lt;개정 2014.10.23., 2021.00.00&gt;</p>	<p>연구실책임자 직무 신설</p> <p>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신설</p>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<b>제12조 (목적 및 구성)</b></p> <p>①~② 생략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과대학장으로 하고 부(과)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15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.&lt;개정 2009.1.20., 2014.10.23., 2018.6.15.&gt;</p> <p>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생략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12조 (목적 및 구성)</b></p> <p>①~②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사무처장</u>으로 하고 부(과)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<u>20인이내로</u>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.&lt;개정 2009.1.20., 2014.10.23., 2018.6.15.,2021.00.00.&gt;</p> <p>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<u>잔임기간</u>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&lt;개정 2021.00.00.&gt;</p> <p>⑤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⑥ <u>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.&lt;신설 2021.00.00.&gt;</u></p> <p>1. 정기회의 : 연 1회 이상</p> <p>2. 임시회의 :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</p> <p>⑦ <u>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.&lt;신설 2021.00.00.&gt;</u></p>	<p>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장 변경</p> <p>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신설</p>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제13조 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본 대학교 “대학 안전관리 규정” 을 따르되,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④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할 수있다.&lt;개정 2009.1.20., 2014.10.23.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13조 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본 대학교 “대학 안전관리 규정” 을 따르되, 연구실안전법 제11조 ②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할 수 있다.&lt;개정 2009.1.20., 2014.10.23., 2021.00.00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&lt;개정 2014.10.23.&gt;</li> <li>2.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&lt;개정 2014.10.23.&gt;</li> <li>3. 정밀안전 진단계획의 수립&lt;개정 2014.10.23.&gt;</li> <li>4.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&lt;신설 2021.00.00.&gt;</li> <li>5.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&lt;신설 2021.00.00.&gt;</li> <li>6.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&lt;개정 2014.10.23.&gt;</li> <li>7.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 사고 및 비상 상황 시 현장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.&lt;개정 2014.10.23.&gt;</li> <li>8. 위원회의 정기적인 회의 결과는 주관 부서에서 정리하여 기록으로 보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들 모두가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조치한다.</li> </ol>	<p>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신설</p>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<b>제15조 (안전점검)</b></p> <p>① 각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의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들은 매일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안전 사항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. &lt;개정 2014.10.23., 2018.6.15.,&gt;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관은 1년에 1회 이상 대학 전체의 안전점검을 세부적으로 실시한다.&lt;개정 2014.10.23.&gt;</p>	<p><b>제15조 (안전점검)</b></p> <p>① 각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의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들은 매일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안전 사항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. <u>다만,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이상 실시 해야 한다.</u>&lt;개정 2014.10.23., 2018.6.15., 2021.00.00.&gt;</p> <p>②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③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관은 1년에 1회 이상 대학 전체의 안전점검을 세부적으로 실시한다. <u>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.</u>&lt;개정 2014.10.23., 2021.00.00.&gt;</p> <p>1. <u>저위험연구실</u>&lt;신설 2021.00.00.&gt;</p> <p>2. <u>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. 이 경우 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&lt;신설 2021.00.00.&gt;</p>	<p>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반영</p>
<p><b>제 5 장 교 육</b></p>	<p><b>제 5 장 교육·훈련 및 건강검진</b>&lt;개정 2021.00.00.&gt;</p>	<p>건강검진 조항 추가에 따른 제목 수정</p>
<p><b>제17조 (교육 및 훈련)</b></p> <p>①~④ 생략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17조 (교육 및 훈련)</b></p> <p>①~④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⑤ <u>안전교육 및 훈련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실 안전법에 의거 별도로 정한다.</u>&lt;신설 2021.00.00.&gt;</p>	<p>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반영</p>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&lt; 신 설 &gt;</p>	<p><u>제17조의1 (실험·실습실 안전보건조치)</u>&lt;신설 2021.00.00.&gt;</p> <p>① <u>총장(기관의 장)은 실험·실습실이용자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험·실습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생명, 신체의 손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안전 교육·훈련</u></li> <li>2. <u>건강검진의 실시</u></li> <li>3. <u>실험·실습실 긴급조치 및 사고보고</u></li> <li>4. <u>실험·실습실 안전수칙</u></li> <li>5. <u>그 밖에 필요한 사항</u></li> </ol> <p>③ <u>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험·실습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실험·실습실 출입제한 및 출입금지</u></li> <li>2. <u>교원의 실험·실습 교과목 강의 제한 및 교원업적 평가 시 반영</u></li> <li>3. <u>학생의 실험·실습 교과목 수강 제한</u></li> <li>4. <u>실험·실습 기자재 구매 제한</u></li> <li>5. <u>그 밖에 교육연구 및 학생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	<p>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반영</p>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17조의2 (건강검진)</b><u>&lt;신설 2021.00.00.&gt;</u></p> <p>① <u>총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p>③ <u>특수건강검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(특수건강진단기관)에서 실시하여야 하며, 일반 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총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총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,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<u>총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·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⑦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검진</p> <p>2.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른 건강검사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</p>	<p>건강검진 조항 추가에 따른 내용 신설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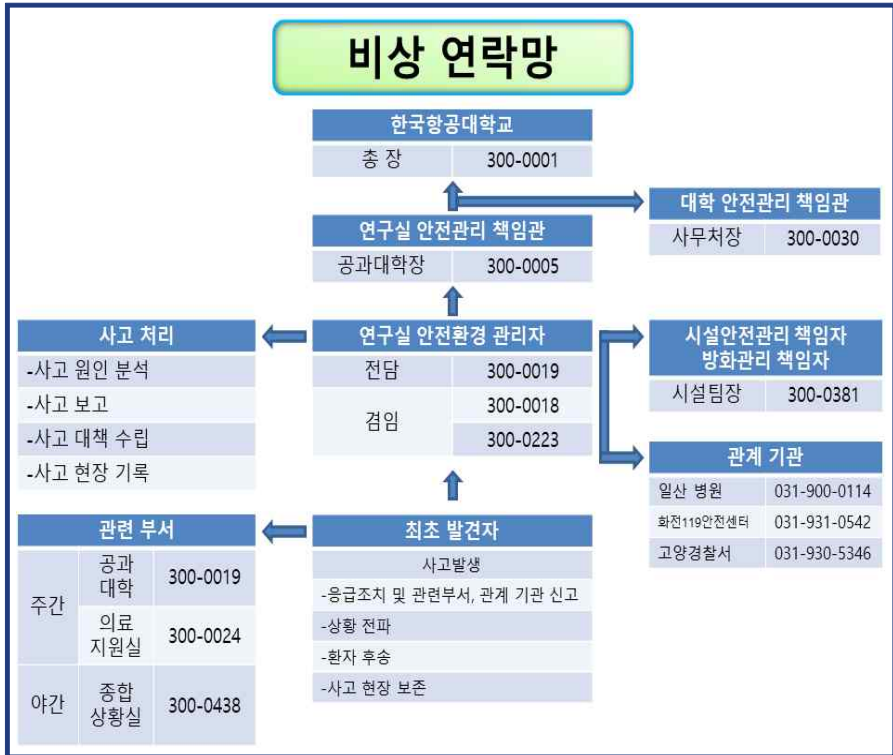
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&lt;신설&gt;</p>	<p>3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98조제1항에서 정 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 시한 건강진단</p> <p>⑧ 총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「산업안전보건 법 시행규칙」 제146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작 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(발암성 물질,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, 생식독성물질 외의 물질을 취급하는 연 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건강검진 조 항 추가에 따 른 내용 신설</p>
<p>제18조 (안전관리비)</p> <p>① 수탁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 정할 때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%이상 2%이하범위 안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&lt;개정 2016.3.1.&gt;</p>	<p>제18조 (안전관리비)</p> <p>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.&lt;개정 2016.3.1., 2021.00.00.&gt;</p>	<p>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반영</p>
<p>제20조 (보험가입)</p> <p>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&lt;개정 2014.10.23.&gt;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&lt;신설&gt;</p>	<p>제20조 (보험가입)</p> <p>① 총장은 연구실안전법 제26조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의 상 해·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 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&lt;개정 2014.10.23., 2021.00.00&gt;</p> <p>②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, 피보험자·수익자 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&lt;신설 2021.00.00.&gt;</p>	<p>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반영</p>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&lt; 신 설 &gt;</p>	<p><b>제20조의1 (실험·실습실 안전사고 보상)</b><u>&lt;신설 2021.00.00.&gt;</u></p> <p>① <u>실험·실습실이용자가 실험·실습실에서 교육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·질병·신체장해·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대학은 필요시 자체 수입금에서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요양급여</u></li> <li>2. <u>장해급여</u></li> <li>3. <u>유족급여</u></li> <li>4. <u>장의비</u></li> <li>5. <u>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</u></li> </ol> <p>③ <u>제2항의 따른 비용 지급은 실험·실습실이용자가 대학에 선지급을 요청한 비용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(공제포함)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초과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반영</p>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-----	---------	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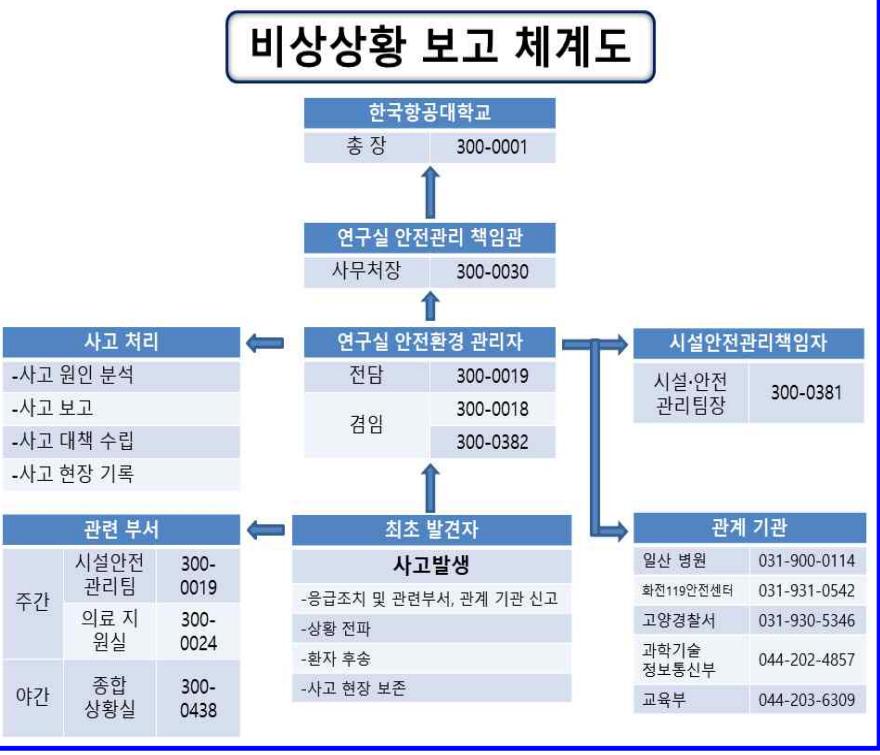
**제24조 (사고발생시 긴급 대처 및 행동 요령 등)**  
 ① 생략  
 ② 사고발생 등에 따른 비상연락망은 다음과 같다.  
 <신설 2016.3.1., 개정2018.6.15.>



※ 비상 연락처 변경시 수시 적용

< 신 설 >

**제24조 (사고발생시 긴급 대처 및 행동 요령 등)**  
 ① <현행과 동일>  
 ② 사고발생 등에 따른 비상상황보고체계도는 다음과 같다.  
 <신설 2016.3.1., 개정2018.6.15., 2021.00.00.>



※ 비상 연락처 변경시 수시 적용

제25조 (기타) 대학 실험·실습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21.00.00.>

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연락처 변경

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연락처 변경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&lt; 신설 &gt;</p>	<p>[별첨 3] 위험물 반입 및 폐시약 폐기 처리 절차&lt;신설 2021.00.00.&gt;</p>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ue; padding: 10px;"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5px; width: 45%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위험물(화공약품, 고압가스 등) 반입 절차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험물(화공약품, 고압가스) 구입 연구활동종사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위험물 반입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험물 반입 신고서 작성</li> <li>- 화공약품, 고압가스 관리일지 작성</li> <li>-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</li> <li>- MSDS 비치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설안전관리팀 계층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실험실 보관 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화공약품 :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에 보관</li> <li>고압가스 : 가스전도방지장치에 고정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폐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화공약품 : 폐액 및 폐시약 폐기 처리 의뢰</li> <li>고압가스 : 해당 업체에 반납</li> </ul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5px; width: 45%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폐시약 폐기 처리 절차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구실험실 폐시약 발생 연구활동종사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폐시약 폐기 의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폐액 및 폐시약 처리 의뢰서 작성</li> <li>- 제출(시설안전관리팀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폐기물 저장소 이동 및 성상별 분리보관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폐기물 저장소 보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폐시약 폐기처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의뢰</li> <li>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완료 및 처리 기록 보관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설안전관리팀</p> </div> </div> </div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험물 반입 및 폐시약 폐기 처리 절차 신설</p>